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80
----------	------

2021년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0월 15일 박기재 의원외 11명
2.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3. 상정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12월 17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박기재 의원)

1. 제안이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음.
- 이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을 마련하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¹⁾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자 제안되었음.

2 주요사항 검토

□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안 제8조 신설)

- ‘세계 실종아동의 날’(5.25.)은 실종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종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념일로 미국에서 1983년에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개최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실종예방을 위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음.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²⁾는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실종아동의 날로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였음³⁾.

1) 제3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 아동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2020.4.7.일부개정, 2020.10.8.시행

- 동 개정안은 법 제3조의2를 반영하여 시장이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취지 및 내용적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 실종아동 현황 및 실종아동예방 사업

- 실종아동 교육, 예방, 홍보, 보호 및 지원 등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서울시 등 자치단체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종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음.
- 실종아동 신고접수는 매년 전국적으로 20,000건 안팎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99%이상 실종아동을 발견하고 있지만, '21.4.기준으로 장기 실종아동은 840명이고 실종된 지 20년 이상 된 장기실종아동은 663

3) 제15회 실종아동의 날('21.5.25.)은 실종아동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후 첫 행사임.

명(78.9%)임.

<실종아동 신고접수 및 발견율 현황>

	2017	2018	2019	2020	2021.4.
신고접수	19,956	21,980	21,551	19,146	6,068
발견율(%)	100.2	99.7	99.4	99.5	99.8

출처 : 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보도자료(2021.5.25.)

<장기실종아동 현황>

(*21.4.30.기준, 단위 : 명)

계	1년 미만	1년~5년	5년~10년	10년~20년	20년 이상
840	86	30	15	46	663

출처 : 보건복지부·경찰청·아동권리보장원 보도자료(2021.5.25.)

<서울시 실종아동 현황>

	2016	2017	2018	2019	2020
서울시 실종아동	3,195	3,253	3,435	3,494	3,587

출처 :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 실종아동 발생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위해 ‘실종아동의 날’ 기념행사가 금년도 경우에는 5월 25일 개최되었으며, 사회공헌기업과 협업을 통해 호프테이프⁴⁾, 유튜브 영상에 실종아동 정보 송출 등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여 홍보 활동을 한 바 있음.
- 또한 서울시는 실종아동 발생 방지 및 실종아동 찾기에 대한 사회

4) 호프테이프란 장기실종아동의 실종 당시 모습과 경찰청의 ‘나이변환 몽타주’ 기술로 재현한 현재 추정 모습, 실종 장소, 신체 특징 등 실종아동 정보가 인쇄된 포장용 박스테이프를 지칭하며, 이를 부착한 택배물은 전국 각지로 배송되어 장기실종아동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적 관심을 제고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실종아동 예방 캠페인-2021년 제15회 그린리본 마라톤’ 행사를 지원하였음.

- 정부와 서울시는 실종아동 예방을 위한 사업을 기 추진하였으나, 최근 5년간 서울시 실종아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서울시에서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통해 실종아동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아동이 조기에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3 종합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조례의 입법 취지 및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적 차원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기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80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 박기재,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소영, 김제리,
김호진, 김화숙, 문병훈,
오한아, 이영실, 조상호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하고, 실종아동의 날부터 1주간을 실종아동주간으로 지정하고 있음.
- 이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실종아동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환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8조</u> (생 략)</p>	<p><u>제8조</u>(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u>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u>제9조</u> (현행 제8조와 같음)</p>

문서번호

2021100800000016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보건복지위원회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원상 팀장
이혜린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10.08

회신일 : 직접입력

내용문의 : 02-2180-7955

서울특별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 실종아동의 날 행사비용 ≙ 50,000천원

= 10,000천원 × 5년

※ 2021년 여성가족정책실 입양의 날 행사비 10,000천원

○ 실종아동 발생예방 교육비용 ≙ 150,000천원

= 30,000천원 × 5년

※ 2021년 여성가족정책실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업비 30,000천원

○ 실종아동 발생예방 홍보비용 ≙ 91,000천원

= 18,200천원 × 5년

※ 2021년 시민건강국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비 15,000천원

※ 2021년 주택정책실 층간소음예방 홍보물 제작 및 배포비 21,40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추계세제팀장 이원상

주 무 관 이해린

☎ 02-2180-7955

e-mail : lovelyynn91@seoul.go.kr